

대전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18가단224245(본소), 2021가단119121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정산금 청구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3. 4. 28 선고 2021나129570(본소), 2021나129587(반소) 판결
대전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18가단224245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

담당변호사 강명구, 김용호

피고(반소원고)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, 고봉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

변론 종결 2021. 11. 4.

판결 선고 2021. 12. 2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40,763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9.부터 2021. 12. 2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7/8은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[본소]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69,523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반소]

원고는 피고에게 55,978,8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9. 4. 피고로부터 충남 계룡시 C 외 3필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공사대금 300,000,000원, 공사기간 2017. 9. 11.부터 2018. 2. 27.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7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한편,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변경된 부분 및 하자(이하 '이 사건 하자 등'이라 한다)가 존재하며 그에 관한 각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63,33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이다.

1	미시공 보수 공사	15,600,000원
2	변경시공 보수 공사	34,010,000원
3	하자를 선보수한 공사	4,510,000원
4	하자 보수 공사	10,210,000원
합계	64,330,000원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감정인 D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

가. 이 사건 공사대금 30,000,000원 청구

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,000,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. 그런데 아래 제3항 반소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 등에 관한 공사대금 70,763,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,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 등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30,000,000원 채권은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공사완공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추가공사대금 39,523,000원 청구

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추가공사대금 39,523,000원의 지급을 구하나, 갑 제2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하여 완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반소

가. 이 사건 하자 등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

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당초 설계도면과는 달리 미시공되거나 변경된 부분, 하자가 존재하며 그에 관한 각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64,33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이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하자 등에 관한 공사대금 70,763,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1)

나. 그 외 미시공하였다는 공사대금 청구 부분

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'가설공사 중 보호막 설치공사', '미장공사 중 판넬히팅 공사', '기계설비공사 전체'를 미시공하였다고 그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합계 13,927,198원의 지급을 구한다.

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하자 등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면서 위 각 미시공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, 을 제3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위 각 미시공 부분을 미시공하였거나 그 공사대금의 합계액이 13,927,198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산재보험료 청구 부분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4,039,791원 중 1,900,000원만을 납부하였다고 그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,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(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),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중 일부만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

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 상대로 원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,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라. 대납금 상당액 청구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통신설비대금, 2017. 11.경부터 2018. 6.경까지 7개월 분 상하수도료, 2017. 10.경부터 2018. 6.경까지 8개월 분 전기료(이하 '통신비 등'이라 한다)를 대납하였다며 대납금 1,288,600원의 지급을 구하고, 을 제4-4, 4-8, 4-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통신비 등 1,288,6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

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공사에 통신설비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상하수도료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, ②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7. 9. 11.부터 2018. 2. 27.까지인데 피고가 납부한 상하수도료, 전기료는 2017. 10.경부터 2018. 6.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통신설비설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, 피고가 납부한 상하수도료, 전기료 등이 오로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마. 소결론

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 등에 관한 공사대금 70,763,000원 중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30,000,000원과 동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남은 나머지 40,763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. 6. 9.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12. 2.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,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심우성

별지

1)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별지 2 기재와 같다.